

2021년도 문화재위원회

## 제2차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1. 9. 3. (금), 14:00~16:50
- ▣ 장 소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회의실
- ▣ 출석위원 : 8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공지사항 및 투표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 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 목 차

## 【심의사항】

- |   |                          |   |
|---|--------------------------|---|
| 1 |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소위원회 구성·운영 | 3 |
|---|--------------------------|---|

## 【검토사항】

- |   |                                 |  |
|---|---------------------------------|--|
| 1 |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대곡천 암각화군」 명칭 조정 |  |
|---|---------------------------------|--|

## 【보고사항】

- |   |                                 |  |
|---|---------------------------------|--|
| 1 |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 마련 계획 보고            |  |
| 2 | 세계유산지구 지정 추진계획 보고               |  |
| 3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제도 개선 및 등재 신청 재개 보고 |  |
| 4 | 한국의 갯벌 등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  |



# 심 의 사 항



## 1.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소위원회 구성·운영

### 가. 제안사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안건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 및 타 분과 심의와 연계되는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함

### 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목 적 :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안전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 및 중요 안전에 대한 본위원회 심층 논의 시간 확보
- 심의사항
  - 세계유산 주변에서 계획된 개발행위가 유산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고보조지원사업,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행위 등)
- 개최시기 : 매월 1회 ※ 안전이 있는 경우 수시 개최
- 구 성 : 5명
- 시 행 일 : 소위원회 구성·운영 확정 후

### 라. 관련법률

- 관련 규정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8조(소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9.25>

② 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이 지정한다.<개정 2008.9.25>

##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요청되는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①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장 및 간사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건 심의 등을 통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운영,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제6조(소위원회 운영)** ① 「문화재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사전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안건 또는 법 제8조제1항의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 마. 의결사항

#### ○ 원안 가결

- ○○○, ○○○, ○○○, ○○○, ○○○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함
- 3인 이상 참석시 회의 성원됨
- 출석 7명 / 원안 가결 7명

# 검 토 사 항



## 2.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대곡천 암각화군」 명칭 조정

### 가. 제안사항

「대곡천 암각화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명칭 조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대곡천 암각화군」은 2010년 세계유산 잠정목록 「대곡천 암각화군」(영문명 : Daegokcheon Stream Petroglyphs)으로 등록되었음
- 2021년 2월 <세계유산 우선등재 목록> 심사 시, 유산 소관 지자체인 울산시는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영문명 : Petroglyphs in the Bangudae Valley)를 제안한 바 있으며, 2021년 4월 암각화가 위치한 지역 일대 자연유산은 「울주 반구천 일원」(蔚州 盤龜川 一圓)명칭의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었음
- 향후 세계유산 등재 추진 시 유산 현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잠정목록의 명칭을 조정하고자 함

\*다. 라. 마. 바. : 현재 진행중인 사항으로, 추후 별도의 행정조치(세계유산센터와 협의)를 실시한 이후 공개 예정

\*근거 :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 제1항

### 사.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대곡리, 천전리 암각화 및 지형 조건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 출석 8명 / 원안 가결 8명





# 보 고 사 항

### 3.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 마련 계획 보고

#### 가. 보고사항

기 등재된 세계유산 주변에서의 개발행위 관련 유네스코 및 자문기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영향평가 관련 그 간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 나. 보고사유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2015년 이후, 세계유산 보존관리의 효과적 수단으로 각 국가의 유산영향평가(HIA, Heritage Impact Assessment) 제도화를 장려해오고 있으며, 개별 유산의 보존관리 검토시 인근의 개발계획 혹은 신규 사업계획에 대해 유산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
- 이에 그 간 유산영향평가(HIA) 실시를 통한 세계유산센터 협의 추진 경과 및 향후 법적·제도적 보완을 통한 국내 HIA 절차 마련 계획을 보고함

\*다. 라. : 현재 진행중인 사항으로, 추후 별도의 행정조치(법률개정, 지침 마련)를 실시한 이후 공개 예정

\*근거 :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 제1항

#### 마. 의결사항

- 보고 접수함
  - 이후 절차 마련시, 대상사업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내용을 재보고
  - 출석 8명 / 접수 8명

## 4. 세계유산지구 지정 추진계획 보고

### 가. 보고사항

「세계유산법」 제10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및 제11조(세계유산지구의 보호)에 따라, '한국의 갯벌' 등 15개 세계유산에 대한 세계유산지구 지정 추진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 나. 보고사유

- 「세계유산법」 제10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및 제11조(세계유산지구의 보호)에 근거하여, 등재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진정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세계유산지구(세계유산구역, 완충구역) 지정이 필요함
- 또한, 신규 도입 예정인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실시를 위한 공간적 대상 범위의 설정이 선행되어야 함
- 이에 세계유산지구 지정 추진계획을 보고드립니다

### 다. 지정 개요

- 지정대상 : '한국의 갯벌' 등 15개 세계유산
- 지정구분 : 세계유산지구(세계유산 구역 15개소, 완충구역 11개소\*)  
\* 종묘, 창덕궁, 석굴암·불국사, 화성은 완충구역 없음

\*다. 라. 마. 바. : 현재 진행중인 사항으로, 추후 별도의 행정조치(법률개정, 관보 고시)를 실시한 이후 공개 예정

\*근거 :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 제1항

### 사. 의결사항

- 보고 접수함
  - 위원회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신중한 추진 필요
  - 출석 8명 / 접수 8명

## 5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제도 개선 및 등재 신청 재개 보고

### 가. 보고사항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제도 개선이 완료되어 등재 신청이 재개됨에 따라 그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 나. 보고사유

- 제38차 유네스코 총회(2015. 11월)에서 세계기록유산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결정한 이후, 전문가 워킹그룹 회의 및 회원국 워킹그룹 회의를 거쳐 마련된 제도 개선안이 제21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2021. 4월)에서 승인됨
- 이에 2017년 12월부터 제도 개선 완료 시까지 잠정 중단되었던 등재신청 접수가 재개됨에 따라 세계기록유산 제도 개선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함

### 다. 보고내용

#### 1) 그간 경과

- ('15.11월) 제38차 유네스코 총회, 세계기록유산 제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의결
  - \* 중국이 신청한 <남경대학살 기록물> 등재('15.10월) 이후 일본 측 발의
- ('15.12월~'17.3월) 전문가 워킹그룹, 제도 개선 의제 설정 및 회원국 등 의견 수렴, 제도 개선(안) 마련
  - \* 전문가 워킹그룹: 국제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14명으로 구성된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 주관 기구)를 주축으로 구성
- ('17.10월) 제202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제도 개선(안) 미승인 및 회원국 참여 확대 의결
- ('18.1~9월) 회원국 워킹그룹 구성 및 제도 개선 관련 회의
- ('19.10월) 제207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워킹그룹 참여국 수 제한(지역그룹별 최대 6개 국) 및 기한 연장 의결
- ('20.3월~'21.3월) 회원국 워킹그룹 재구성(32개국) 및 회의(6회) 개최
  - \* (회의 의제) 이의제기가 있는 등재 신청 유산의 심사, 대화, 정보공개 등

- (1그룹) 그리스,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 (2그룹) 알바니아, 리투아니아, 러시아, 아르메니아, 폴란드, 체코
- (3그룹) 우루과이, 파나마, 브라질, 파라과이
- (4그룹) 미얀마, 필리핀, 인도, 중국, 한국, 중국
- (5그룹) 가나, 가봉, 잠비아
- (6그룹) 팔레스타인,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튀니지

- ('21.4월) 제21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제도 개선(안) 승인 및 등재 신청 재개 권고
  - \* 관련 규정 개정(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 국제자문위원회 규정,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 일반지침)
- ('21.7월) 유네스코 사무국, 차기 등재 신청 절차 재개 공고
  - \* 등재신청서 접수 기한 : '21.11.30.(화)

## 2) 제도 개선 주요 내용

절차	변경 전	변경 후
등재 신청	개인, NGO, 국가 등 신청 주체 제한 없음	국가로 일원화
등재 심사 절차	①사무국 등재신청서 완결성(서류보완 여부) 검토 ②등재소위원회 예비심사/권고 ③국제자문위원회 심사/권고 ④유네스코 사무총장 승인	①사무국 등재신청서 완결성(서류보완 여부) 검토 ②등재소위원회 적격성(부적격 기록물 여부) 검토 ③사무국, 디지털 플랫폼 게재(회원국 공개) *60~90일/심사반대 의견 접수 시 심사 중단, 대화 개시 ④등재소위원회 예비심사/권고 ⑤국제자문위원회 심사/권고 ⑥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승인
대화 절차	-	심사반대 의견 접수 시 3-6월내 사무총장이 대화 중개자 임명 사무국, 대화 진행상황 집행이사회에 정기(격년) 보고
권고 종류	등재 여부	등재, 잠정 등재, 보류, 반려
등재 결정	유네스코 사무총장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 3) 향후 계획

- 차기 세계기록유산 신청 대상인 <4.19혁명 기록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등재신청서 제출('21.11월) \* 신청 대상 선정 : '17.6.27.
  - 4.19혁명 기록물 : 선언문, 일기, 구술자료 등 국내외 기록물
  -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 사발통문(沙鉢通文), 문집, 일기 등

## 라. 참고사항

###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UNESCO Memory of the World) 등재 제도

- 개요 : 유네스코의 3대 유산 제도(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중 하나로 인류의 다양한 기억을 보호하고 세계인이 공유하자는 취지로 1992년 유네스코 프로그램으로 창설
  - ※ 협약에 근거, 국가간 협의를 통해 등재를 결정하는 세계유산, 무형유산과 달리 기록유산은 집행이사회에서 채택한 일반지침에 기반하며, 민간 전문가 중심
- 목적
  - 세계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기록유산을 적절한 기술을 통해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
  -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 인식과 보존의 필요성 증진, 기록유산 사업 진흥 및 신기술 응용을 통한 접근성 제고
- 주관 : 유네스코 정보사회국 산하 국제자문위원회(IAC)
- 신청건수 : 국가별 2개(격년), 공동등재는 제외
- 신청대상 : 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인류의 중요한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세계적 중요성은 직접/간접으로 증명된 것이어야 함)
  - 문자 기록(책, 필사본, 포스터 등), 이미지/기호 기록(태생, 지도, 악보, 설계도면 등), 시청각 자료(음악, 영화, 음성기록물, 사진 등), 디지털 기록물 등
- 등재 기준
  - 진정성(Authenticity) 및 완전성(Integrity)
  - 세계적 중요성(World significance) : 기본적인 기준
    - 역사적 중요성(Historical significance), 형태와 스타일의 중요성(Form and style significance), 사회적·공동체적 또는 정신적 중요성(Social, community or spiritual significance)
  - 세계적 중요성(World significance) : 상대적 기준
    - 독특함 또는 희귀성(Uniqueness or rarity), (유산의)상태(Condition)

### □ 우리나라 유산의 등재 현황(총 16건)

-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의궤,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동의보감, 일성록,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한국의 유교책판, 조선왕조어보 및 어책, 조선통신사 기록물,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 마. 의결사항

- 보고 접수함
  - 출석 7명 / 접수 7명

## 6. 한국의 갯벌 등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 가. 보고사항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2021.7.26.)됨에 따라 그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 나. 보고사유

-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2021.7.26.) 되었으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결정 시 2단계 등재를 2025년까지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음. 이에 「한국의 갯벌」 등재 관련 그간 진행 경과 및 향후 관리 방안, 2단계 등재 추진계획을 보고함

### 다. 보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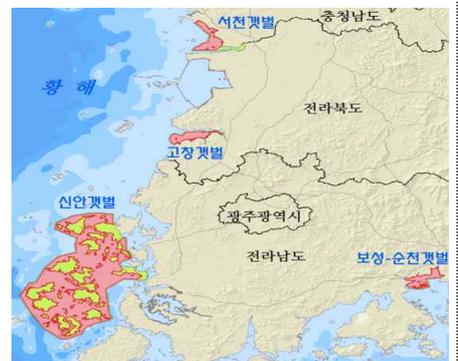
#### 1) 그간 경과

- ‘서남해안 갯벌(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10)
- ‘(재)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설립(‘14)
-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19.1.), IUCN 현지실사(‘19.9.~10.)
- 세계유산 자문·심사기구(IUCN) 반려(Defer) 권고(‘21.5.11.)
- 세계유산위원회 지지교섭 논리개발 및 교섭 실시(‘21.5~7월)
-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 등재 결정(‘21.7.26.)

\* 2021.7.16. ~ 7.31. 온라인 개최(중국)

- (유산명칭)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
- (소재지/면적) 3개 도, 5개 시·군 / 203,003ha
  - 3개 도(충남, 전북, 전남) 5개 시·군(서천군, 고창군, 신안군, 보성군, 순천시)
  - 신청유산(4개) : 서천 갯벌, 고창 갯벌, 신안 갯벌, 보성-순천 갯벌

명 칭	합계 (km <sup>2</sup> )	유산지역 (km <sup>2</sup> )	완충구역 (km <sup>2</sup> )		
			소 계	육역	해역
총면적(km <sup>2</sup> )	2,030.03	1,284.11	745.92	585.1	160.82
서천 갯벌	104.66	68.09	36.57	4.0	32.57
고창 갯벌	74.11	55.31	18.80	3.82	14.98
신안 갯벌	1,773.4	1,100.86	672.54	573.22	99.32
보성-순천 갯벌	77.86	59.85	18.01	4.06	13.95



## 2) 세계유산 등재 가치

- 등재기준(x): '한국의 갯벌'은 전세계 주요 철새이동로인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로(EAAF)'의 주요 경유지 중 하나로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물새 종을 비롯한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임

\* 당초 신청서 제출 시에는 등재 기준 viii, ix, x을 모두 신청하였으나, x기준만 인정됨

\* 3) 4) : 현재 진행중인 사항으로, 추후 별도의 행정조치(지자체 신청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실시한 이후 공개 예정

\*근거 :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 제1항

## 라. 의결사항

- 보고 접수함

- 출석 7명 / 접수 7명